

【 주간포커스 】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안은 재고되어야

이창우 연구위원

2010년 11월12일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민영의료보험업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 민영의료보험의 관리·감독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기구를 두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편익을 위하여 민영의료보험의 상품표준화와 가입차별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현재와 같은 감독체제가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며 의료비수가 등 의료비관리를 위한 공사협력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보다 시급해 보인다.

□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 민주당 박은수 국회의원, 그리고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1월 12일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음.

○ 동 법안은 민영의료보험의 팽창을 막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민영의료보험업을 규정하여 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영의료보험이 사회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민주노동당 법안 제1조).

□ 동 법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아니하는 비급여부분만을 보장하도록 하여 민영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로 제한하고 있음.

□ 둘째, 민영의료보험의 관리·감독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며 민영의료보험의 관리기구와 감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민의료보험을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도록 명시.
 - 민의료보험 감독위원회를 두어 보험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 민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관리, 표준보험료율 등을 결정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셋째, 민의료보험상품의 표준화, 급여의 정액화, 보험급여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명시함.
-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민의료보험상품을 표준화하도록 규정
 - 민주노동당 법률안의 경우 민의료보험상품 중 정액형 보험상품만을 허용하고 있음.
 - 보험계약 및 보험급여에 대하여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명시
- 이러한 특징을 살펴볼 때 동 법안은 의료서비스가 전 국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하에 이러한 논리를 민의료보험까지 확대·적용하고자 한 것임.
- 그러나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해서는 이미 국민건강보험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전 국민이 누려야 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는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확대해야 할 문제
- 민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을 대체하는 경우, 즉 민영사회보험과 같은 형태로 역할이 전환되는 경우 「보충적 민의료보험법」의 취지가 타당
 - 이러한 체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스위스와 네덜란드이며, 이들 국가에서는 정부가 공적건강보험제도의 보장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민영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형태 – 이 경우 「보충적 민의료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감독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민의료보험상품을 정액형으로만 한정할 경우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잡한 관리 감독기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실손형 의료보험이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정액형 의료보험이 활성화되고 있었으며 최근에도 여전히 정액형 의료보험의 역할이 큰 상태임.

- 정액형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금액과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은 경우 계약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실손형 의료보험과 같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음.
- 민영의료보험을 통해 소비자들이 갑작스런 의료비 지출에 대비할 수 있고 효용도 제고된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증가하는 의료비의 적정화를 위한 공사협력 모델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임.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상의 이유로 혹은 여타 이유로 보장하지 아니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민영의료보험이 위험전가의 수단으로 소비자에게 효용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함.
- 민영의료보험은 현재 상당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시장을 통하여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소비자들이 적정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이에 합당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건강이 증진될 때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영의료보험회사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민영의료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이번 법안 제정의 동기를 충분히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고위험군의 보험가입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KiRi